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9. 25 선고 2024가단624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근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만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정오

변 론 종 결 2024. 8. 28.

판 결 선 고 2024. 9. 25.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자기앞수표에 관하여 2021. 9.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54,912,0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4,912,0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7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자기앞수표에 대한 증여계약은 7,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자기앞수표에 대한 양도계약'이라고 특정하였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이 선택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형이다.

나. 원고는 2016. 1. 1. 망인에게 4,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6. 12. 21.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을 2021. 1. 1.까지 변제하되 연 20%의 이자를 매월 5일에 지급하고 지연손해금 비율을 연 20%로 정하며, 망인이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망인은 2017. 3. 17.부터 2021. 8. 2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을 변제충당하면 2020. 3. 17. 기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7,200만 원이 남아 있다.

라. 망인은 2021. 9. 10. 망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에서 7,300만 원을 별지 목록 기재 각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자기앞수표'라 한다)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망인은 2021. 10. 13.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직전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여 증여하였다. 위 증여계약은 원고 등 망인에 대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채권액 7,200만 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7,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 있던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망인의 채무 변제, 망인의 병원비 및 장례비 등으로 사용하라는 부탁과 함께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행위가 증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교부할 당시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교부할 당시 가액이 920만 원인 망인의 포터Ⅱ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자 D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가액 700만 원인 2015. 7. 28.자 근저당권, 저당권자 원고 명의의 채권가액 1,500만 원인 2016. 12. 30.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위 차량에 관하여 220만 원(=920만 원-700만 원)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3) 따라서 원고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6,980만 원(=7,200만 원-220만 원)은 288,000,000원(= 817,000,000원 - 529,000,000원)의 범위에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망인의 무자력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교부할 당시 망인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으며, 이때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51127 판결 참조).

2)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교부할 당시 망인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받은 날 이를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그로부터 망인이 사망한 직후인 2021. 10. 22.까지 사이에 망인이 치료를 받은 E병원에 대한 병원비 8,087,970원, 납골당 비용 470만 원, 장례식장 비용 530만 원을 위 계좌에서 송금한 사실, 위 각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자기앞수표 중 18,087,970원(= 8,087,970원 + 470만 원 + 530만 원) 부분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이를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입금한 계좌에서 위 18,087,970원 이외에 F 등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2022. 2. 16. 위 계좌를 해지하면서 해약금 59,314,880원을 인출한 사실, F 등에게 송금된 돈과 위 해약금이 망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위 돈은 전적으로 피고의 관리 및 지배하에 있었던 점, 망인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예금을 이 사건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여 채무변제를 부탁할 것이 아니라 직접 계좌이체 등의 용이한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자기앞수표 중 18,087,9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고에게 교부한 행위는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망인의 무자력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며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형으로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 있던 망인으로부터 사후 처리를 부탁받고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을 뿐 그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선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선의라는 취지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망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자기앞수표 증여계약은 54,912,030원(=7,300만 원-18,087,97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4,912,0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형

별지